

#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규정

제정 2021. 04. 29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2조(편제) 및 제31조의9(경험학습 학점인정)에 의거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수업)** 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되, 개설 교과목의 경우 이 규정을 따른다.

② 수업은 주중 주·야간 또는 주말(토요일)에 운영한다. 다만, 총장이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절제 수업, 시간제 수업 또는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.

③ 전공과목 중 일부는 e-러닝 또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e-러닝,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은 학과의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④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출석수업의 비중은 50% 이상으로 한다.

⑤ 학내에서 개설된 e-러닝 강의는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, 취득 성적은 해당학기 평균평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.

**제3조(공결처리)**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1.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: 해당기간

2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: 해당기간

3.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직장 내 위급상황인 경우 : 1일(학기당 1회 한정)

4. 그 외 공결은 수업관리규정 제15조의 2(공결처리)에 의거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.

②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평생교육융합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평생교육융합대학장은 공결신청서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휴학)** 학칙 제23조를 따르되, 질병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 중 휴학기간이 총 4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과 평생교육융합대학장을 경유하여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5조(학기구분)**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 2학기로 나눈다.

② 이와 별도로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따로 둘 수 있으며, 교육상 필요에 따라 1년 2학기제 + 계절학기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경험학습 인정제)** ① 경험학습 인정제는 학생이 신청하고 학장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우리 대학교 입학 이전 국내·외 전문직업인 등의 타 학교·연구기관·산업체에서 학습·연구·실습 등이 전공과 관련될 경우 경험학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경험학습 인정학점은 매 학기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, 인정가능한 전체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8분의 1 이내로 한다.

④ 학점을 취득한 것을 인정할 때에는 경험학습 학점인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.

**제7조(졸업요건)** 학칙 제 35조에 의하며,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8학기 이상 등록한자, 다만, 조기 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
2. 130학점 이상 취득자
3. 조기 졸업자는 전 과목 평균성적(열람용 성적 기준)이 4.0 이상인 자.
4. 졸업논문(졸업종합시험, 졸업작품 등) 심사에 합격하고, 교육단위별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

**제8조(장학금)** ① 장학금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.

② 교육부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국가 지원 및 지자체를 통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중복지원 인정범위는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한다.

**부 칙**(기획예산팀-275, 2021. 04. 29.)

이 규정은 2021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